

문서번호 고덕동양 500-2016- 73

시행일자 2016. 11. 21.

수 신 경기도청, 인천시청, 서울시청,(이상 장애인복지과), 수원보훈지청 복지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국방부 보건복지관 기획조정실,
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참 조 업무담당관

제 목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 '고덕 파라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계획 알림

1. 귀청(처, 부, 실,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16년 12월 2일(예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에 752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칭 : 고덕 파라곤)

3. 이에 기관추천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 안내문 내용을 참조하시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라며, 집계된 기관추천 명단을 12월 5일(월)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특별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 무 처 : 고덕 파라곤 모델하우스
- 담 당 자 : 분양대행용역사 (주)니소스씨앤디 팀장 임재성
- 연 락 처 : 010-8937-0850
- 이 메 일 : sihu1132@naver.com
- 기 타 : 분양문의 1588-4585



* 첨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8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고덕 파라곤 분양소장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 고덕파라곤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30층 총 11개동, 아파트 752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이주대책 대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 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총 공급세대	타입별		
		71A	84B	110A
기관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48	21	27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 주택의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함.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는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